

「교원 복무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0. 2. 18. 개정 판 (시행 2010. 3. 1.) → 2012. 8. 13. 개정 판 (시행 2012. 9.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22/compare?from=315&to=316>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9:02:4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근) ① 교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결근) ① 교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제13조(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u>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u> 으로 하되, 외국인 전임교원 및 보직을 맡은 교원의 책임시수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08-13> ② 교원이 책임시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수의 소속학부(과)장은 다음 학기에 미달한 시수를 우선 보충시켜야 한다. ④ 책임시수 계산은 학(과)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결 근"을 "결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당 12시간(연구중심교수 9시간)으로"를 "교육중심 12시간, 연구중심 9시간으로"로 하고, "정한다."를 "정한다. <개정 2012-08-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